

문서번호 : 18-624

발신일자 : 2018.07.02

수 신 : 수신처 참조(12개사)

참 조 : 투자상품부

제 목 : 소규모펀드 해지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의 건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3 조에 의거하여 귀사에서 판매 중인 다음의 소규모 펀드에 대한 해지처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3. 귀사의 업무에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해지 처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귀사의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 다 음 -

1. 해지 대상 펀드 : 이스트스프링 업종일등 증권투자신탁(주식)
2. 해지 일자 : 2018년 9월 14일
3. 해지 일정

구 분	일 정
한국예탁결제원 수익자명부 기준일*	2018년 8월 13일
협회 소규모펀드 해지방법 공시	2018년 8월 13일
신규/추가매입 중단일	2018년 8월 17일부터
펀드 환매신청 가능일	2018년 8월 31일까지
펀드 환매신청 제한일	2018년 9월 3일부터
펀드 해지(상환)일 및 해지(상환) 대금 지급일	2018년 9월 14일

* 한국예탁결제원의 수익자명부 기준일로부터 실제 고객안내문 발송일까지는 3~4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수신처]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IBK 투자증권, KEB 하나은행, SK 증권

※ 첨부: 고객안내문 1부. 끝.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

대표이사 사장 박 천 응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이스트스프링 업종일등 증권투자신탁[주식](이하 '펀드')의 운용을 맡고 있는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입니다.

먼저, 당사의 펀드에 가입해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당사는 동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이자 관리자로서의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객님께서 투자하신 펀드에 대해 펀드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 결과 당사는 고객님께서 투자하고 계신 펀드가 규모에 따른 운용상의 제약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사는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의 펀드 규모로는 효율적인 운용에 제약이 발생함은 물론 소규모 펀드의 장기화가 결국 고객님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동 펀드를 2018년 9월 14일자로 해지하고자 합니다.

실제 금융당국에서도 최소 운용규모에 미달하는 소규모펀드의 해지 및 통폐합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 조(투자신탁의 해지), 동법 시행령 제 223 조는 1개월 이상 펀드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펀드를 해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지가 결정된 펀드의 환매청구는 2018년 9월 3일부터 중단되며, 고객님께서 해당 펀드를 2018년 8월 31일까지 환매신청 하지 않으신 경우 별도의 환매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매처리 될 예정입니다.

고객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펀드를 해지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지만 향후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자 소규모 펀드를 정리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를 원하시면 가입하신 판매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객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댁내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식회사